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류제품 순환이용 노력 의무 부여 등〉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50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의류제품 순환이용 촉진 노력 의무 부여 등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2025년 5월 14일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신 유행이 반영된 의류를 하나의 업체가 제작·유통하는 방식의 ‘패스트 패션’이 유행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SPA 브랜드가 의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생산방식, 유행의 민감성 등으로 다량의 의류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의류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류제품 순환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의류제품 순환이용 촉진 노력 의무 부여 등

개정안은 의류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처분 과정에서 순환이용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의류 폐기물 발생량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7조의2(의류제품의 순환이용 촉진)</u> ① <u>의류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u>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류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의류는 대부분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고,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며 섬유를 염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의류 생산에는 막대한 물과 에너지가 소모됨.

또한, 합성 섬유 의류는 자연 분해가 어려워 매립시 미세플라스틱 유출, 소각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등 의류는 생산-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 폐수, 유해화학 물질을 배출함.

배출된 유해 물질은 기후위기·환경오염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에코디자인 규정(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¹⁾, 판매되지 않은 의류 폐기 금지 및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2018년 6만 6000톤이었던 의류 폐기물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 11만 톤까지 약 2배 증가했고, 2023년 기준 폐의류는 11만 3,000톤이 발생하는 등 폐의류가 다량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이지만, 국내에는 ESPR과 같은 폐의류 제도나 실태 파악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1) 2024년 7월 발효,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유럽 연합의 규정

- 미판매 섬유제품, 신발 및 가전제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폐기할 경우 폐기 상품의 수량 및 사유를 보고하도록 함.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짐.

[폐섬유류 내 폐의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톤/년)

연도	구분	발생량	처리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
2021	소계	120,481.6	119,382.3	1,071.4	-	27.9
	생활폐기물	118,386.3	118,386.3	-	-	-
	사업장폐기물	2,095.3	996.0	1,071.4	-	27.9
2022	소계	108,434.2	107,237.7	908.2	-	288.2
	생활폐기물	106,536.3	106,536.3	-	-	-
	사업장폐기물	1,897.9	701.4	908.2	-	288.2
2023	소계	113,347.6	111,965.9	508.4	0.0	873.4
	생활폐기물	110,938.1	110,938.2	0	0	0
	사업장폐기물	2,409.5	1,027.7	508.4	0.0	873.4

자료 :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의류 생산·수입·판매업자에게 순환이용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의류 폐기물 발생량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폐의류 실태를 파악하고 의류 다량 생산·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순환이용 촉진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²⁾에 반할 우려가 있어 보임.

2)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의류 순환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다른 개정안³⁾이 상정·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사항과 범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의류 순환이용 관련 개정안 비교]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사업자는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된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고품의 소각 등 폐기를 할 수 있다.	의류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판매되지 않은 의류(이하 “의류 재고품”이라 한다)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류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폐의류 관련 통계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⁴⁾에 따라 폐의류 발생량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⁵⁾에 입력되고 있으므로, 추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안번호 제2204759호,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안번호 제2209726호,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4) 「폐기물관리법」 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 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3.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 자원순환정보시스템(생활폐기물), 율바로시스템(사업장 폐기물)

가로 의류폐기물 발생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 개정안은 시스템 중복의 소지가 있음.

현재 의류 폐기물 통계는 재활용 업체가 처리하는 폐기물에 한정하여 집계되어, 일반 가정(종량제 봉투)이나 수거 업체를 통해 버려지는 의류폐기물 통계는 집계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전체 의류폐기물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의의가 있으나, 이미 관련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의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보다는 현재 집계되지 않고 있는 의류 폐기물을 산정·관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부는 국내 의류업계의 영세성 및 인프라 부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 도입 시 중소기업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1 : 폐섬유 등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폐섬유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1~2023년)

(톤/년)

연도	구분	발생량	처리			
			재 활용	소각	매립	기타
2021	소계	540,691.3	326,970.9	326,970.9	93,153.4	5,688.0
	생활폐기물	411,704.3	58,415.9	270,274.2	80,823.6	2,190.6
	사업장폐기물	128,987.0	56,463.0	56,696.7	12,329.8	3,497.4
2022	소계	495,249.9	112,939.4	305,761.7	70,768.4	5,780.3
	생활폐기물	381,077.0	61,015.2	251,418.8	65,777.2	2,865.8
	사업장폐기물	114,172.9	51,924.2	54,342.9	4,991.2	2,914.5
2023	소계	522,727.5	131,142.6	322,513.4	64,352.3	4,719.3
	생활폐기물	412,598.8	84,809.9	266,371.5	59,714.3	1,703.1
	사업장폐기물	110,128.7	46,332.7	56,141.9	4,638.0	3,016.1

□ 폐의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1~2023년)

(톤/년)

연도	구분	발생량	처리			
			재 활용	소각	매립	기타
2021	소계	120,481.6	119,382.3	1,071.4	-	27.9
	생활폐기물	118,386.3	118,386.3	-	-	-
	사업장폐기물	2,095.3	996.0	1,071.4	-	27.9
2022	소계	108,434.2	107,237.7	908.2	-	288.2
	생활폐기물	106,536.3	106,536.3	-	-	-
	사업장폐기물	1,897.9	701.4	908.2	-	288.2
2023	소계	113,347.6	111,965.9	508.4	0.0	873.4
	생활폐기물	110,938.1	110,938.2	0	0	0
	사업장폐기물	2,409.5	1,027.7	508.4	0.0	873.4

※ 참고자료 2 : 의류 재고품 관련 해외 규제 현황

① EU

-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24.7 발효)에 따라 미판매제품 폐기 원칙적 금지, 미판매제품 정보공개 의무 신설
 - (폐기금지) '26.7월부터 의류, 신발 등 미판매 제품의 폐기 금지, 중기업은 '30.7월부터 적용(소기업 면제)
 - (정보공개) 미판매 제품 폐기 시 폐기량, 폐기 사유,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정보를 대국민에게 공개('25.7월~)
- 폐기물기본지침(WPD)에 따라 '25년 1월까지 회수·수거 체계 구축 필요, 회수·수거 목표율 및 EPR 기본지침 등 발표 예정(~'28년)

② 프랑스

- 의류·섬유 대상 **EPR제도 도입**('07~), EPR 품목 대상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22.1월~)
 - * 위반 시 과징금 : 개인 3,000유로 이하, 법인 15,000유로 이하
 - 또한, 미판매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인된 조직 등에 기부하여 재사용하거나, 사용된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

③ 스페인

- 미판매제품(섬유, 장난감, 전자제품 등) 폐기 원칙적 금지('22.10월)

④ 미국

- (메사추세츠 州) 의류·섬유 제품의 소각·매립을 제한('22.11월~)
- (캘리포니아 州) 의류·섬유 대상 **EPR제도 도입**('24.9~)

⑤ 일본

- 관련 업계가 자발적으로 환경영향(온실가스 배출, 폐기량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